

# 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57,640,758	10,729,223
일반회계	320,149,957	9,604,499
특별회계	37,490,801	1,124,724
기타특별회계	37,490,801	1,124,724
상수도사업특별회계	5,513,659	165,410
수질개선특별회계	25,938,664	778,160
의료보호특별회계	403,114	12,093
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	4,635,364	139,061
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	1,000,000	30,00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"변동없음"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,970,000천원이고 재난·재해예비비는 30,443,806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

제 8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다.